(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 Por.8/2567 호
투자 촉진 승인을 받은 외국 법인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실무자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기준과 조건

2024 년 11 월 1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16/2567 호『투자촉진 승인을 받은 외국 법인의 사무실 및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기준』에 이어, 실무자(operational-level workers)들의 사무실과 주거용 토지 허가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 투자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투자청은 불기 2520 년(서기 1977 년) 투자위원회 고시 제 11 조, 제 13 조, 제 27 조에 의거하여 2023 년 투자위원회 고시 제 Por.10/2566 호『투자 촉진 승인을 받은 외국 법인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실무자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기준과 조건』을 취소하고, 다음의 내용을 고시한다.

1. 투자촉진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실무자들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소유 허가는 촉진 증명서 기반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총 토지 면적에 기반한다.
2. 촉진 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실무자들의 주거용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법인은 허가 기간 동안 납입 등록 자본금 5 천만 바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실무자들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소유 허가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3.1 법인은 1 개 법인 당 20 라이[i]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3.2 주거지는 촉진 프로젝트의 실무자만을 위한 생활 공간과 적절한 규모의 다용도실(utility area)을 갖춘 건물로 개발해야 한다.
   3.3 투자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 부지 내 공용 구역의 적정 비율에 한해 주차장, 응급실, 주방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4 실무자들의 주거지가 촉진 프로젝트 장소와 같은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주거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 허가 신청은 촉진 프로젝트에서 주요 공공 도로를 따라 10km 이내에 위치해야 가능하다.
   3.5 승인된 건물의 방 개수는 촉진 프로젝트의 실무자 수와 일치해야 한다.
4. 사무실과 실무자들의 거주 공간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된 토지는 허가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도덕, 관심, 전통 또는 지역 생활 방식을 위반하는 형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5. 촉진 기업은 투자 촉진 기간 동안 공무원이 토지 이용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토지 소유 허가를 받은 사무실과 실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이 고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청은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취소할 것이고, 투자청의 통지일로부터 1 년 내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7. 2023 년 6 월 23 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 Por.10/2566 호『투자 촉진 승인을 받은 외국 기업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실무자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기준과 조건』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현재 투자청에서 검토 중인 신청서는 해당 고시에 명시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권리 및 혜택을 부여하도록 고려할 것이다.

고시일 2024 년 11 월 4 일

Narit Therdsteerasukdi

(Mr. Narit Therdsteerasukdi)

태국 투자청장

[i] 라이(rai)는 태국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1 라이는 1,600 ㎡와 같다.